

대구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51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21. 12.경 피고와 영천 C 외 여러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상의 공장 건축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 7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은 1)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소외 D와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장 부지 앞부분의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는 피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 상에 건축하는 공장이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고가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부지 상의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 내지 10호증, 을제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1) 주식회사 E은 2016. 8. 19.경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장부지 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대금 1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G조합이 이 사건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3)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경락받은 사실, 4) 피고는 2021. 11. 15.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상의 공장건축공사의 시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수받은 사실, 5) 원고와 피고는 2021. 12. 피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상의 공장건축공사의 시공자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 상의 공장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설계사무실에 제출하고, 준공에 필요한 공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6)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로부터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D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판단

피고가 스스로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갑제1호증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D가 피고를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 앞부분의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고가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갖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시공자로서의 권리에 기초하여,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고, 원고가 준공허가를 받도록 협조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잔여 공사도 원고의 책임 하에 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

위 갑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